

# 고 성 군 세 감 면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( 의안번호 제471호 )

## 심 사 보 고 서

1998. 6.

총 무 위 원 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4. 29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4. 29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6. 19

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개정사유
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달된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고성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코자 함.

### 3. 주요골자

-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당초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까지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확대함.(안 제2조제2항)
- 감면의 범위가 1가구 1차량에 한정됨에 따라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신설함.(안 제2조제3항)
-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당초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외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함.(안 제4조제1항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승차정원 15인이차인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한 것으로
-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복지향상과 아울러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장애인 해당법주는

● 답 :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에 한함.

## 6. 토 론 : 없음.

## 7. 심사결과

○ 1998. 6.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